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727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안 제7조)

- 1)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 2) 위원의 제척·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위원회의 조직·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1) 친일재산의 조사·환수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정원과 업무분장 체계를 정함.
- 2) 사무처에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관련 법무업무, 보전처분, 과태료·포상금 등 위원회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3) 기획국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과 인사·조직·예산·회계 및 조사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조사와 은닉재산의 발굴 및 미귀속 재산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정원을 충원하며,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보직하도록 함.
- 5) 이러한 조직·인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일재산의 조사·환수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 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진술청취 및 실지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의견청취 및 외국 소재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조사, 처분 대가의 환수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 2)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선정,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조사·환수, 이의신청 및 포상금 지급·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포상금의 지급·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신고 또는 자료·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정보의 독자성·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통지·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제보 환경을 조성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1) 자료제출·출석·진술 및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
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비비 및 2027년 본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10. 14.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의결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속 결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①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친일재산 확인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정을 하기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결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조사자료의 보존 및 열람·등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8항 및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5.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제6조(상임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척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위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조직) 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처에는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둔다.

제9조(법무담당관) ①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법무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2.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관리·운영
3.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소송 및 헌법소송 등 송무 업무의 총괄·수행
4.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관한 법무업무
5.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6.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이의신청의 처리
8. 과태료 및 포상금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10조(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

로 보한다.

② 기획국에는 운영지원과·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기록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위원회의 조직·정원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6.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 조사·처리
7.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및 재산등록업무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조정
2. 위원회·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3.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4. 위원장 등의 지시사항 총괄·관리
5.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6. 정책홍보 등 위원회 홍보

7. 국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8. 재산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 기구와의 교류·협력
9. 민원 접수 및 민원실 운영
10. 백서 편찬 총괄

⑥ 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자료의 수집·분석·유지·정리에 관한 업무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
3.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5. 위원회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

제11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조사국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고,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국에는 조사총괄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④ 조사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서기관으로, 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조사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조사업무의 기획·조정 및 조사국 행정업무의 총괄
2.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에 관한 사료·연구성과의 수집 및

분석

3. 친일반민족행위자 가계도의 작성 및 보완
 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의 원용 여부 검토
 5.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조회·수집 및 분석
 6. 친일행적에 관한 조사
 7.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및 “국” 명의로 등기된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8. 은닉재산에 관한 제보의 접수 및 처리
 9.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10.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재산조사 및 조사지원
- ⑥ 조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자 중 국가귀속 결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조사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조사
 3.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재산조사
 4.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5.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국가귀속결정·확인결정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등 조사 관련 행정지원
 6. 위원회가 조사1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 ⑦ 조사2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전의 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을 한 자에 대한 재조사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조사
3.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재산조사
4.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5.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국가귀속결정·확인결정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등 조사 관련 행정지원
6. 위원회가 조사2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⑧ 조사3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조사대상 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2.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국가귀속결정·확인결정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등 조사 관련 행정지원
3. 위원회가 조사3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⑨ 조사4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조사대상 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2.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국가귀속결정·확인결정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등 조사 관련 행정지원
3. 위원회가 조사4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⑩ 조사연구관은 조사 관련 자문 및 연구와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재산조사와 조사지원 등에 관하여 조사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기획예산처, 1명(행정주사 1명)은 재정경제부, 3명(행정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 행정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교육부, 6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2명]은 법무부, 6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전산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명,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명)은 국가보훈부, 4명(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법제처,

1명(학예연구사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유산청, 4명(세무사무관 1명, 세무주사 2명, 세무주사보 1명)은 국세청, 5명(경정 1명, 경위 4명)은 경찰청, 4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산림청, 1명(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제15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9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이

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 장소에 임의로 출석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9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 재산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조사 및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
-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절차 등) ①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쳐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 또는 자료·정보 제공이 친일재산의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에 기여한 정도, 제공된 자료·정보의 독자성·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의·의결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위원장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

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신고 또는 자료·정보 제공이 친일재산의 조사 또는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제공·누설되거나 이용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그 밖에 신고 또는 자료·정보 제공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포상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 및 반환할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반환할 금액 및 산정근거,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환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신고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친일재산을 신고한 사람 또는 친일 재산의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에 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9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3개월 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별표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총 계	82
정무직 계	3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2
별정직 계	26
4급 상당	4
5급 상당	9
6급 상당	11
7급 상당	2
일반직 계	48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 세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편사연구관 · 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5
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사서주사 · 편사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2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시설주사보 · 임업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1

특정직 계	5
경정	1
경위	4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1호	300	500	800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0	800	1,000
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00	500	800
라.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00	500	800
마.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00	500	800
바.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3호	500	8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연 락 처	(02) 2204 - 4150